# A Study on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n Women Defecting to China and How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 Soyoung Yi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position and international law and to study ways to protect human rights.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an analysis of literature based on various data on North Korean defector women in China.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under international law, understands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from China's point of view, and examines how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Conclusions and suggestions are that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order, the determination of a North Korean refugee's refugee status rests primarily with China, the State Party, so the international legal approach to recognizing refugee status is not realistic. Therefore, an approach that advocates a change in China's position on not recognizing North Korean defectors as refugees should be avoided. Since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a complex issue in which the interests of various countries are intertwined, it is necessary not to limit itself to China's domestic problems, which have no choice but to focus on its own interests, but to seek solutions in a humanitarian way with neighboring countries.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Women, International Law, Enforced Repatriation, Refugees, Human Right

#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인권 보호 방안 연구 이 소 영\*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중국의 입장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살펴 보고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중국 내 북한 이탈 여성을 연구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국제법으로 본 재중 탈북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중국의 입장에서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이해한 후,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을 알아본다.

결론 및 제언: 현행 국제법 질서 하에서 탈북자의 난민여부 판단은 일차적으로 당사국인 중국에 있기 때문에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법적 접근은 현실성이 낮다. 그러므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국내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주변국들과 인도적인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어: 탈북여성, 국제법, 강제송환, 난민, 인권

<sup>□</sup> 접수일: 2023년 5월 19일, 수정일: 2023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20일

<sup>\*</sup>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Doctoral Course, Dong-Guk Univ., Email: ysy9355@hanmail.net)

#### I. 서론

식량난으로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불안정한 신분상으로 공개적인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정확한 실태파악은 어려우나 약 20~3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 중 여성 탈북자는 80~90퍼센트 이상 차지한다. 중국내 탈북자는 주로 북한과의 국경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은 신분에 따른 위협과 언어소통, 그리고 친척의 원조 등의 이유로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는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의 동북 3성에 주로 밀집되어 있다(강효백, 2009).

1990년대 중국은 탈북민들을 자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유로 강제 북송하였다. 불법체류자로 강제 북송되지 않기 위해 북한 여성들의 경우는 중국 농촌을 떠나는 많은 중국 여성을 대신해 농촌지역 남성들의 사실혼 배우자가 되거나 은신처 확보가 쉬운 음식업소, 서비스업 등에서 체류하여 왔다. 그러나 강제혼인을 당하거나성매매대상이 되는 등 인권유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불안한 신분의 재중 여성 탈북자의 실상이 일부 언론,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으나 인권보호 차원의학술적인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억압등을 피해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인권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Ⅱ. 국제법으로 본 재중 탈북자의 법적 지위

#### 1. 고문방지 협약과 난민협약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는 "체약국은 어떤 사람이 고문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타국으로 추방(expulsion), 귀환(return)이나 인도(extradition)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협약 제33조에서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장복희,

2017).

강제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당국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 정치탄압을 통해 체제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난민협약 정의에 따라 협약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를 심각한 식량난을 견디지 못해 북한을 탈출한 불법이민자로 간주하고 강제 북송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불법입국자인 만큼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정부는 난민협약(1951)과 난민의정서(1967)에 1982년 가입하여 탈북자를 보호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국 내 소수민족 정책과 북한과의 정치적 이 해관계 등을 이유로 탈북자 관련 난민판정에 소극적이다.

### 2. UNHCR(유엔난민기구)

탈북자가 난민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당사국인 중국에 있다. 국제적 난민업무를 관장하는 UN난민고등판무관(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은 중국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 다만 난민문제에 대한 구속력 없는 결정이나 지침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은 사회권규약(ICESCR, 1966), 자유권규약(ICCPR, 1966),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1966),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79), 고문방지협약(CAT, 1984)과 아동권리협약(CRC, 1989)의 6대 핵심 인권조약 중 자유권규약을 제외한 5개 조약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모든 조약은 재중 탈북자의 중국내 체류 보장과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김석우, 2011). 이 중에서 고문방지협약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 민협약보다 그 적용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손현진, 2017).

UNHCR은 중국 내 UNHCR의 활동과 관련해 중국과 1995년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베이징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김병록, 2012). 그러나 중국정부는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UNHCR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특히 1999년에 UNHCR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을 방문한 뒤 탈북자중 일부가 UNHCR의 우려대상(persons of concern)이라고 결정한 이후 중국당국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다. 이러한 방침은 1951년 난민지위협약 제35조 위반이며, 1995년 특별협정 제3조 위반이다. 그럼에도 국제난민법상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효과적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 UNHCR이 중국의 자발적 협조 없이 탈북자를 위해 그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구체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

WW.KCI.Z

는다(조정현, 2010). 더구나 UNHCR의 전체 경비 중에 UN예산에 의해 지원되는 약 3퍼센트 일반 행정경비를 제외하면, UNHCR 활동 대부분은 각국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한다(이용수, 2013). 이러한 이유로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UNHCR의 관련국 기능수행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UNHCR이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조약상 의무 이행을 감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에는 국가정기보고제도가 있다. 조약별로 보고서 제출 주기는 2년에서 5년으로 정해져 있고, 각 체약당사국은 이행보고서를 조약별 이행감독 위원회에 제출한다. 조약별 이행감독위원회에서 정기보고서 검토 절차가 끝나면 해당위원회는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를 밝히는데, 중국의 보고서에 대하여 5개 조약별 이행감독위원회는 모두가 탈북자 관련 중국의 인권법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된 조약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다(김석우, 2011).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4년마다 정기적으로 각국의 인권 의무 준수 상황을 점검한다. 2008년 4월 검토가 시작되어 2011년 완료되었는데, 중국은 2009년 2월, 북한은 2010년 11월 회기에서 검토를 받았다. 네델란드와 캐나다등이 탈북자 문제를 중국 쪽에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다는 것은 재중 탈북자 문제의 인권적측면을 제기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김석우, 2011).

UN 총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고, 북한 인권의 국제 형사 재판소(ICC)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3년 연속이다(장복희, 2017). UN사무총장 안토니 우 구 테헤스는 2005년부터 10년간 UNHCR 최고대표를 하였는데, 2013년에 UNHCR 최고대표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장복희, 2017).

UN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I)」를 설립하였다. UN 북한인 권조사위원회의 설립은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최초의 사례로서 2013년 9월 17일 제24차 UN 인권이사회 및 2013년 10월 29일 제68차 UN 총회에서 구두보고(oral update)와 서면 보고서(written report)를 일반에 공개하였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고, 현재도 발생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1

월 41개의 주제별 임무와 14개의 국가별 임무를 가진 UN인권이사회는 독립된 전문가를 두었다. 이 중,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이 2004년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고문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f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등을 두고 있다(손현진, 2017). 매년 2회 발행되는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체류 중인 탈북자에 관한 법적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고문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공동으로 중국 정부에 재중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및 성적착취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서간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탈북자에 관한 모든 국제규범을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김석우, 2011).

국제인권법은 난민지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난민법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제도이다. 탈북자가 중국에서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중국이 국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대우를 할 경우, 중대한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김석우, 2011).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은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UN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협약난민과 달리 위임난민은 유엔이 각국에 대해 UN난민고등판무관의 위임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협약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도 국제인도법상 '사실상의 난민'으로 간주된다. 위임난민도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도록 UNHCR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들(persons of Concern to UNHCR)로 분류되어 보호받는다(박병도, 2012). 버핏 문타폰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5년 10월 3일 제6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은 모두 일단 난민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북한 인접국들의 인도적인 대우를 촉구했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박광득, 2006).

## Ⅲ.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응

중국은 북한과 1960년대 체결한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국경지역업무협정' 그리고 1998년 적용한 '길림성변경(국경)관리조 례'에 따라 탈북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였다(윤여상, 2005).

중국이 특별한 준비 없이 재중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대량탈북사태와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 경제적 손실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의 외교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도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재중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부정하며, 강제송환정책을 고수하였다.

탈북자들은 강제 송환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북송 후에는 북한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탈북자에 대한 북한 형법의 처벌 규정은 크게 세 가지이다. 탈북자 중 형법 제62조 조국반역죄는 5년 이상의 로동 교화형, 재산 몰수형, 무기 로동 교화형을 비롯하여 최고 사형에 처한다. 탈북 후 한국행 시도, 종교인 접촉, 남한 사람접촉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 제233조(비법 국경 출입 죄)에 의해 3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을 선고한다. 그럼에도 탈북자들이 급증하자 단순 탈북자들은 탈북횟수, 탈북이유, 체포 장소, 탈북 후 행적을 고려하여 재판 없이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김윤영, 2011).

중국정부는 한족이나 라오스, 베트남에서 온 소수민족을 중국 내 재정착시키는 경우 UN 난민 고등판무관(이하 UNHCR)과 협력한다. 수년간 UNHCR과 중국정부는 이들 거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북한에 가까운 동북지역에서 UNHCR이 활동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장복희, 2010). 또한,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지만 개인통보제도와 국가통보제도는 수락하고 있지 않아 고문방지위원회가 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를 다룰 수 없다. 따라서 강제송환 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있지만 재중 탈북자나 한국 당국이 고의 및 목적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이규창, 2006).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준은 대체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양분하여 사용하고 있다(홍규덕, 2002).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권의 보편성보다 문화적 상대성을 강조하고,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사회권적 기본권이 우선해야 한다는입장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안정되자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권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던 이전과 달리 2004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 2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개정해 중국 헌정

사상 최초로 인권보장 조항인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国家尊重和保障人权)"를 제33조 2항에 명기하였다.

중국이 헌법에 인권조항을 규정한 이유는 헌법의 보호 아래 인권 보장을 시행하겠다는 국정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비난을 방어하고 국제인권관련기구와의 협력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서구제국 특히 미국으로부터 인권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2004년 이후 중국정부가 재중탈북자와 관련해 종래의 강경책에서 유화적 태도로 전환한 것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인권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강효백, 2009). 이후 2012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처음으로 "인권존중과 보장"을 명기하기도 했다(김석우, 2012).

#### Ⅳ.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

식량난으로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여성탈 북자들은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강제 북송되지 않기 위해 중국 농촌을 떠나는 많은 중국 여성을 대신해 농촌지역 남성들의 사실혼 배우자가 되거나 은신처 확보가 쉬운 음식업소, 서비스업 등에 체류하여 왔다.

재중 여성탈북자들은 중국동포 신분을 가장해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는 약점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탈북을 원하는 북한 여성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는 조직들에 의해 인신매매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탈북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해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하고 있다. 또한, 나이 많은 홀아비나 농촌 총각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법적 신분이 모호해 중국에서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장복희, 2017),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지 정착한 이들의 생활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재중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나 중국정부가 여성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침해와 같이 국제적 공론화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로 확산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공신력 있는 기구와 단체들을 중심

으로 국제적 연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력한 여론을 조성한다면 중국에 대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다(윤여상, 2003).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도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외교적 손실이 득보다 크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북여성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정부, 국내·외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의 지원도 필요하다. 외교적 마찰 등을고려해 한국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경우 국내외 NGO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을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백영옥, 2002).

중국정부는 강제송환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탈북자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탈북자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안에 따라 변통하여 처리하여왔다. 그러나 동북 3성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기정착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탈북여성에 대한 법률 집행에 있어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2004년 12월 1일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 발표자로 초대된 中國人權研究會의 Yang Chengming은 "중국내의 북한인: 도전과 해결책"이란 주제의 발표를 제출하였다. 그의 발표문에는 탈북자 관련 문제 해결과 더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월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개선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 길림성일부지역들이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 거주권을 발급해주기도 하고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기도하였다. 중국은 국내법에 근거해 특정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신분을 보장해 줄 것이 아니라, 중국전역의 모든 탈북여성에게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도록 접근하는 등 이들의권익과 법률 지원을 위한 한・중 양국간 법률공조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강효백, 2009).

## V. 결론 및 제언

탈북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재중 탈북 여성의 인 권 보호 방안으로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법적 접근은 현실성이 낮다. 현행 국제법 에서 탈북자의 난민여부 판단은 일차적으로 당사국인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의지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소수민족 정책과 북한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탈북 자 관련 난민판정에 소극적이다. 그러므로 탈북자를 쉽게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 의 입장을 변화하도록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국내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주변국들과 인도적인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감시위원회, UNHCR, UN 인권이사회 등 보편적 국제기구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강효백(2009), "사실혼 관계의 재중탈북여성 및 그 자녀의 법적지위에 관한 중국법제", 『경희법학』, 44(3): 125-143.
- 김윤영(2011),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25(1): 168.
- 김석우(2012), "재중 탈북자문제와 중국의 책임", 『신아세아』, 19(1): 60-70.
- 김병록(2012).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법학논총』, 19(1): 6.
- 조정현(2010), "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UNHCR 및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2): 212-223.
- 박병도(2012), "재중 탈북자와 국제난민법", 『법학논총』, 19(1): 44.
- 박광득(2006),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3(3): 70.
- 백영옥(2002),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6(1): 256-257.
- 손현진(2017),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1(53): 130-139.
- 이규창(2006), "재중 탈북자 보호와 고문방지협약", 『국제법학회논총』, 51(1): 32.
- 이용수(2013), "두만강유역 경제협력지대 건립을 통한 재중 탈북자 보호방안", 『공익과 인 권』, 13(1): 269.
- 윤여상(2003), "중국지역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1(2): 361
- 윤여상(2005), "미국 '북한인권법' 통과와 탈북자 문제 전개방향", 『한국정책논집』, 5(1): 49.
- 장복희(20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이화젠더법학』, 9(2): 126-140.
- 장복희(2010), "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26(2): 206-208.
- 홍규덕(2002), "탈북여성 인권보호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대안 모색", 『아시아여성연구』, 41(1): 25.

www.kci.go.kr